2020년도 제2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20. 9. 11.(금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 : 권헌영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홍지만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9건(안건번호 제2020-115499호~115568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안건번호 제2020-115499호~115568호{'▲▲▲△ 사이트의 '(음악)Dynamite (가수: 방탄소년단)' 등 89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,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 웹하드 사이트의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도록 교육하고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이용정지 등 여러 가지 규제를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 상습에 의한 불법복제 공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웹하드 사이트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니터링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
- B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, 영화 콘텐츠에 관한 것들로 그 중에는 (음악) Dynamite (가수: 방탄소년 단), (음악) Not Shy (가수: ITZY(있지)), (영화) 테넷 (2020), (영화) 스나이퍼: 암살자의 최후 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조치 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- C 위원 : 안건번호 제2020-115499호~115568호{'■■■■' 사이트의 '(음악)Dynamite (가수: 방탄소년단)' 등 89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 한음악저작물,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

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15499호~115568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 작물, 영상저작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"시정경고" 가결 의견임. 단, 기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"경고의 시정권고" 의견임.

2020년 제2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9. 18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